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시작일은 계약일, 만료일은 장기요양인정종료일' 또는 '희망 종료일') 장기요양등급의 변동 및 인정갱신 등으로 유효기간이 변동되거나 연장될 시, 그에 따른 계약서를 재작성하고 재계약을 실행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수급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계약목적]

1. 복지용구 급여서비스의 계약목적은 노인장기요양 급여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복지용구의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 및 유지, 관리를 위함에 있다.
2. 계약은 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3. 계약 당사자(이용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에게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계약을 체결한다.
 - ①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이용 표준약관을 준수한 계약서를 사용한다.
 - ② 신청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권자인 경우 급여개시 전 반드시 주소지 관할 시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지체없이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복지용구 구입·대여 가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시 가격으로 한다. 다만, 고시 가격이 변동된 때에는 그에 따른다.
2.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연 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한다.
3. 연 한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4.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부담으로 한다.

[월 이용료 비용 산정을 위한 급여기준]

복지용구 급여기준은 수급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복지용구 제품을 구입, 대여가 가능하다.

1. 수급자는 급여품목 중 수급자의 신체 기능상태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한 품목을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으며, 복지용구사업소는 당해 품목만을 수급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2. 내구연한이 정하여진 품목은 재료의 재질, 형태, 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관련 규정이 정한 내구연한 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구입할 수 있다. 다만, 내구연한이 없는 제품 중 미끄럼방지용품과 자세 변환용구 및 안전손잡이 등은 연 한도액 적용구간 내 관련법령에 의거 이용(사용) 개수가 제한될 수 있다.

3.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경우에도 각 품목 당 1개의 제품만 대여가 가능하다.
4.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 품목으로 간주한다.
5. 수급자가 구입한 제품이 내구연한 기간 중 훼손, 마모 및 신체상태의 변화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내구연한 이내라도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6. 수급자가 신체상태의 변화 등으로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는 품목의 변경을 원할 경우 복지용구 추가급여 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이를 확인한 경우 품목을 다시 정할 수 있다.
7.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등을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수급자가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기간 도중에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입원기간 중 특정 대여 품목 및 특정기간에 한해 대여가격을 산정한다.
8. 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며 위 사실을 숨기고 복지용구를 제공받으면 그 책임은 수급자가 부담해야함을 설명한다.
9. 대여기간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통지해야 한다.
10. 수급자가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타 법령에 의해 지급받은 경우에는 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

[대여제품에 대한 관리]

1. 수급자는 대여 받은 제품이 분실, 훼손 되지 않도록 선의의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한다.
2. 대여제품은 용도에 따라 사용하고, 대여품의 취급설명서에 따라 바르게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대여제품을 분실, 훼손 하였을 시, 수급금액에서 감가상각을 한 나머지 금액으로 변상한다. (감가상각율은 내구연한 기간에 맞는 율로 계산한다).

[대여제품의 분실 및 파손 책임]

1. 대여제품이 수급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귀책사유로 대여 기간 중에 파손, 분실된 경우 사업소에 지체 없이 통보하고 파손, 분실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수리비용을 부담 한다.
2. 제품의 자연적인 훼손일 경우 사업소에서 수리비를 부담한다.
3. 대여 기간 종료 또는 수급자가 제품을 반납하고자 할 경우 정상기능이 유지되는 상태로 제품을 반납하여야 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급자와 신원인수인(보호자, 법정대리인 등)의 권리는,
 - ① 보호자는 성별, 나이, 종교 및 경제적 사정 등의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
 - ② 알 권리 및 동의의 권리 : 보호자는 복지용구 제품에 관하여 적절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 ③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 수급자 및 보호자는 질병 및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 ④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역,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하여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 ⑤ 이용자에게 업무범위 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와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 ① 정보 제공의 의무 : 보호자 및 수급자는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자료 및 건강 관련 정보를 욕구사정 시 사업소에 정확히 알려야 한다.
- ② 보호자는 복지용구를 이용함에 있어 본인부담금 납부의 의무가 있다.
- ③ 보호자는 기관의 동의 없이 대여제품의 사양 변경, 가공 또는 개조를 할 수 없다.
- ④ 수급자는 계약에 대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 ⑤ 대여기간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⑥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⑦ 이용자가 의도적으로 본 기관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진다.

[계약의 해제]

계약의 유지 및 계약의 만료,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수급자는 대여 제품이 불필요하게 되면 계약종료일 이전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2. 서비스에 대한 당사자 간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이전에 계약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3. 수급자 본인 또는 그 가족(보호자)이 이용 종료를 희망하였을 때
- 4.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연장 계약을 희망하지 않을 때
- 5. 대여제품 사용 중 노인요양시설 입소하거나 의료기관(병·의원 등)에 입원하였을 때
※ 단, 병원 입원 시 수동휠체어, 욕창예방매트리스는 계속 사용 가능)
- 6. 본인부담금을 6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 6. 구입품목의 급여이용 계약 후 사용한 제품에 대하여는 반품이나 환불이 불가능함을 원칙으로 한다.
- 7. 물품 등의 하자,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하여는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수리, 교환, 환급 또는 배상을 하거나 ,계약의 해제, 해지 및 이행 등을 하여야 한다.